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에 맞춰 투자보조금 지원 요건인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과의 내용 일치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과의 내용 일치화 및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비율 한도 내용 삭제(안 제15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안 제20조)
- 고용인원 기준을 완화하여 투자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안 제21조~제2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상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법」)의 통합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 및 내용의 개정을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검토 결과,

- 안 제15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의 개정(2023.12.4.)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비율이 최대 50%로 상향됨에 따라 현금 지원 비율 한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안의 개정으로 국비 지원 보조금액의 최대 확보로 구미반도체 특화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0조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분권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2023.7.10.)됨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규상 문제가 없음.
- 안 제21조에서 제25조까지는 각종 보조금(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전보조금)의 지원과 국내기업 지원대상의 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2023.11.6.)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원 기업의 확대와 기업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부칙 제2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로 “제21조부터 제25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구미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소급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법령의 소급적용)가 있는 바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하는 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례 참조¹⁾) 소급적용이 필요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